

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◎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

- **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.**
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, ②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(변액특별계정 대출은 D+2~3일 지급), ③ 보험기간 동안 대출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밖에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, ⑤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◎ 민원·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

Q1.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?

-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.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 (은행권자금조달비용지수)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.
따라서, **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 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,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.**

Q2.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?

-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,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◎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회사는 **미납이자를 대출 원금에 가산하며 그 “합산된 대출원금”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.**

또한, **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**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대상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, 해당 조항(6. 즉시변제)의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◎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<https://cyber.abllife.co.kr>) 또는 고객센터(1588-65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. 상품개요 및 유의사항

상 품 명	보험계약대출	대출기간	보험계약 만기 전일까지
대출상환방법	만기 일시상환 (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가능)		

* 계약번호별 세부내역(적용금리, 대출금액, 금리적용방식 등)은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수수료 등 비용부담

- ✓ 대출금액과 이자 외에 대출약정 체결시 **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**은 대출 금액에 따른 **인지세**입니다.

◎ 인지세

※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한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%씩 부담합니다.

대출금액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 1억이하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	15만원	35만원
고객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회사부담	-	3만 5천원	7만 5천원	17만 5천원

- ◎ **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**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**채무자가 부담**하여야 합니다.

3.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**계약체결일**, ②**계약서류를 받은 날**, ③**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*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**서면,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**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**, 대출과 관련하여 **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**하여야 합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
나. 금리인하요구권

【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】 대상 비대상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**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취업·승진·재산 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** **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**(보험업법 제110조의3)를 말합니다.
- 그러나, **보험계약대출**은 고객의 신용상태(개인신용평점, 재산상황 등)와 무관하게 고객님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적립액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, **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**이므로 **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.**

다. 위법계약해지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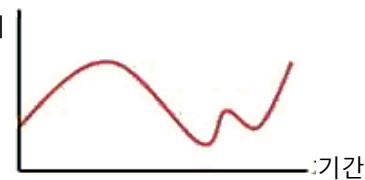
- ◎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**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-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◎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라. 자료열람요구권

- ◎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◎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**8일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◎ 보험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**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**

4. 대출이자율

- ◎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,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

	금리확정형(고정금리)	금리연동형(변동금리)
운용형태	 <p>금리 기간</p>	 <p>금리 기간</p>
대상이 되는 보험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변동주기(통상 1개월)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
대출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(예정이율/표준이율/평균공시이율) + 가산금리(1.5%~1.99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(공시이율) + 가산금리(1.5%)

- ◎ 대출금리 결정(변동)요인
 - 대출금리는 **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**과 **가산금리**로 산정됩니다.

보험계약대출 금 리	= 해약환급금 부리이율 금리확정형(고정) : 예정이율 /표준이율/ 평균공시이율 ·금리연동형(변동) : 공시이율	+ 가산금리 ① 원가요소 (인건비, 인쇄비, 전산처리비 등) ② 유동성프리미엄 (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 등) ③ 목표이익률 ④ 법적비용
---------------	--	--

- **해약환급금 부리이율**은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확정형(고정)은 **예정이율 / 표준이율 / 평균공시이율**, 금리연동형(변동)은 **공시이율**을 의미합니다.

- **예정이율 / 표준이율 / 평균공시이율** : 보험계약 체결시 해당상품의 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 따라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키로 미리 약정한 이율(고정)
- **공시이율** :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(매월, 분기별, 매년 등)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

- **가산금리**는 보험회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, 아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.

- **원가요소** : 업무원가(인건비·인쇄비·전산처리비 등), 세금(교육세 등) 및 준조세성 부담금(보증기관 출연료 등) 등
- **유동성프리미엄** : 보험계약대출을 위한 예비유동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등
- **목표이익률** :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
- **법적비용** : 교육세 등의 법적 비용

- **변액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고정금리로 운영되나, 일반계정에서 대출 받는 것으로 계정전환을 하신 계약은 변동금리로 운영 됩니다.**

5. 대출 상환방법

- 보험계약대출은 **만기일시상환 방식**이 적용됩니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"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"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<p style="color: #0070C0;">※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</p>
---	---

- 상환금액·이자율·시기
 - 보험계약대출은 **만기일시상환 방식**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록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,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.

※ 원리금 부담액 예시 (1천만원을 5%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)

상환방식	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	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
만기 일시상환	<u>11,000,000원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회 ~ 23회 : 41,666원(이자만 납부) ▶ 24회 : 10,041,666원

- **보험계약대출 이자는** 일단위로 계산하여 **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**하며, **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합니다.**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가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계산됩니다.
-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**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**

6. 즉시 변제

-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**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합니다.**
단, 보험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보험계약 시점*	내용
① 시점 무관	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
② '02. 8. 1. 전	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
③ '02. 8. 1. ~ '05. 3. 31.	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,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
④ '05. 4. 1. 후	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

* 해당시점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 기준

- 상기 ②~③의 경우에 **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,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** 수 있습니다.
-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**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** 되는 경우, 고객은 **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**해야합니다.
- 보험계약의 납입최고(독촉)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**납입최고(독촉)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,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**됩니다.

7.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

-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**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(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)**까지입니다.
-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**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**된 경우 **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**합니다.

8.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 - 개인(신용)정보 조회**는 고객님의 **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**
 -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**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**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인 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**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9. 기타 유의사항

-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
 - 보험계약대출은 **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**
- 연체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
 -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**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**
 - 다만,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, 그 "합산된 대출원금"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대출 실행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. 이 경우 **연체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.**
-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
 -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
 - 보험계약대출은 **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**

10.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**일반**

- ① 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.**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, **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**

- ② 신용평점이 하락**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(5천만원 초과시)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

- ③ 사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으셨나요?**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설명을 이해했다면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본인은 에이비엘생명보험회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- ◆ 본인은 보험회사 직원 또는 모집인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고객확인 : 20 . . .

(서명/인)

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소비자보호센터**(080-807-7493) 또는 **인터넷 홈페이지**(<https://cyber.abllife.co.kr>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 e-금융 민원센터**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**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**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